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8. 17 선고 2022가단1848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7. 20.

판 결 선 고 2022. 8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구리시 C 임야 24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88㎡ 지상 파이프조 보온덮개 천막지붕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,
나. 구리시 C 임야 249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구리시 C 임야 249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3. 15.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88㎡ 지상에 파이프조 보온덮개 천막지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의 기재 및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태지영

별지